외국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

개정 2013. 5. 24.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개정 2014. 5. 21.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

대학원시행세칙 제39조 및 제41조의 5에 의해 외국인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규정 한다.

1. 장학종별 및 종별 신청 자격

※ 외국인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100%장학 수혜 불가

	장학 종류	자격 대상 및 기준							비고	
	장학 100%	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아래 각 항에 해당 되는 자 1. 어학성적 기준 영어 한국어 TOEFL								
		IBT	CBT	PBT	TOEIC	TEPS	IELTS	KLAT	TOPIK	학과 추천 후 대학원운영위원회
-		61	173	500	650	550	5.5	4급	4급	심의
		2.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 3.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 4. 외국대학 전임교원 및 해당 국가기관 연구소 연구원								
	장학 30%	1. 특별 장학 대상자가 아닌 자 및 학과 미추천자 2.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에 C학점 이하 취득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자 3. 외국인 의료보험 미가입자								

※ 외국인장학 100%의 해당 장학자격을 갖춘 자라도 학과 심사에 의해 장학 금 지급률을 30%로 정할 수 있다.

2. 장학종별 의무 사항

장학구분	근무 의무 사항					
장학금 100%수혜자	학과에서 주당 10시간 강의 또는 연구 업무 보조					

※ 외국대학교 전임교원 및 국가기관 연구원 자격자는 근무 의무사항 예외

3. 장학금 신청

장학금 100%를 수혜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URP종합정보에서 외국인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신청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는 최초학기에 제출(변경 시 추가 제출)

4. 장학 자격 유지 요건

매학기 이수한 전 과목의 각 취득 학점이 C+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C학점이 이하 취득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 : 장학 100% → 장학 50%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 : 장학 100% → 장학 30%

5. 관련 서식

- 외국인 장학금 신청서(URP신청)